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생 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 9. (생 략) 10. I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,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 9. (현행과 같음) <u>10. I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,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u>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⑤ (생 략)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~⑩ (생 략)	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<u>또는 위탁결제원을</u>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~⑩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